경기도 공고 제2024 - 187호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 지원규모: 130**억원**
-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구분	융자대상	한도액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 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 ○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지원절차(요약)

대출가능 사전 상담	신청인 ⇒농협
⇩	
융자신청 접수 및 사전 심의 등	시·군
대출가능 여부 심사 및 결과 보고	농협 지부
⇩	
道에 융자 대상자 추천	시·군
⇩	
적격여부 최종 검토, 융자금 확정	경기도
⇩	
대출 실행	농협⇒ 신청인

□ 융자 신청방법

-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 접수처 : 시·군 위생부서
- ○ (신청)구비서류
  -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 ○ 서식 내려받기
  -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식품진흥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붙임 1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군 부서 현황

시군명	소재지	전화번호	부서명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031-228-2228	위생정책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324-2232	위생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031-8075-3318	식품안전과
화성시	시청로 159	031-5189-2230	위생정책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3102	위생정책과
부천시	길주로 210	032-625-4303	식품위생과
남양주시	경춘로 1037	031-590-2237	위생과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81-2235	위생정책과
평택시	경기대로 245	031-8024-3752	식품정책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031-8045-2232	위생정책과
시흥시	시청로 20	031-310-2233	위생과
파주시	시청로 50	031-940-4432	위생과
김포시	돌문로 43, 4층(사우동)	031-980-2223	식품위생과
의정부시	시민로 1	031-828-2934	위생과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031-760-8434	식품위생과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5157	식품위생농업과
광명시	시청로 20	02-2680-5484	위생과
군포시	청백리길 6	031-390-0741	위생자원과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282	위생과
오산시	성호대로 141	031-8036-6824	식품위생과
이천시	부악로36(중리동)	031-645-3371	보건위생과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031-678-5731	보건위생과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본관1층	031-550-2155	위생안전과
의왕시	시청로 11	031-345-2822	지역경제위생과
포천시	중앙로 87	031-538-3608	식품위생과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031-770-2231	보건정책과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031-887-2652	보건행정과
동두천시	방죽로 23	031-860-2459	농업축산위생과
과천시	관문로 69	02-3677-2234	자원위생과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031-580-2408	허가민원과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031-839-2232	위생팀

붙임 2 관련 서식

(서식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 업 자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융자금의 용도	1. 영업장시설개선 2. 화장실시설개선 3. 운영자금
신청금액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업 종			

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	업소규모	제곱미터	식품제조업	업체규모	제곱미터
	월평균매출액	천원		연간매출액	천원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기타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이행확약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시 설 현 황	○ 규모 : ○ 시설 :
계 획 내 용	
상 환 계 획	
시 공 업 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증빙서류	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사용 계획서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실소요액)			
신 청 금 액			
규 모	종업원 수 : 매장 규모 : 월 매출액 :		
지정일 및 신고(등록)일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기타 식품접객업소
	0000.00.00	0000.00.00	0000.00.00
계 획 내 용	(예시) 인건비 : 0,000,000원(00개월, 종업원 00명) 식자재 구입비 : 0,000,000원 임대료 : 0,000,000원		
상 환 계 획			

'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접객업소 운영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증빙서류	1. 공사견적서 1부. 2. 시설개선 신청당시 사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사 업 이 행 확 약 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장(화장실)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받은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가. 식품접객업소 : 2개월 이내
   나.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

2. 융자받은 후 본업소를 폐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3.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4. 대출당시 관할 시· 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귀청에 사전 신고 및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5.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체 융자금중 2천만원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상환하겠습니다.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등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7.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8.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1)

시 설 개 선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

업소명		전화번호		영업자	
				관리자	
소재지					
융자금액		신청일 (시군청)		대출일 (농협)	
융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

당초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
연장 사유 (구체적으로)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시공업체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심의서

시·군명 :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공사소요액	총 백만원 (* 신청액 : 자부담 :)			

2. 융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시 설 개 선 융 자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4.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5. 기타 무신고 여부	
6.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자 여부	

※ 심의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작성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이행확약서(각서)			
4. 공사견적서			
5. 영업신고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4년 월 일

심의위원장(실·과장) 직 성명 (인)

심의위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의위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서식 4-1)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의서

시·군명 :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신청액	총 백만원			

2. 융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4.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5. 기타 무신고 여부	
6.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자 여부	

※ 심의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작성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융자신청서			
2. 사업이행확약서(각서)			
3. 지정증 사본(모범, 위생업소)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표기			
4. 영업신고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4년 월 일

심의위원장(실·과장) 직 성명 (인)

심의위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의위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서식 5) 신청자용

사 업 완 료 신 고 서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관리자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신청일 (시군청)		대출일 (농협)	
융자및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 일자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시공업체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 1부 (정기상환통장 제외) 2.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 : 1부 3.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 “앞면”(바인더화)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 － － 호		
영업신고번호	시·군 제 호 (전화번호:)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 지정	유 · 무 (지정일 : 년 월 일)		
융자신청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대 출 일	년 월 일	대출금액	원
상환기간(용도)	년 거치 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시설규모(면적)	o 총 면적 : ㎡, － (영업장 : ㎡, 화장실 : ㎡)		
공사소요액(계)	융자금	자부담	공사기간
원	원	원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이행실태 점검사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선전 점검			
기간중 점검			
완료후 점검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1)

시설개선 신청시 사진(신청일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뒷면 2)

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완료일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서식 7)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현지조사서

1. 융자업소 현황

시군명	업 종	업소명	대출자	소 재 지	융자용도	융자금액

신청일	대출일	지출액	목적외 타용도 사용여부(＊근거서류 첨부)

2. 시설개선 추진사항

구 분	착공일자	공사완료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진척도(%)
식품접객업					
화장실					
식품제조가공업					

3. 시설개선 이행사항

구 분	시설개선 유무		미 이행 사유(＊구체적으로)
	이 행	미이행	
식품접객업			
화장실			
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설개선 이행여부를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조사자 소 속) 직) 성명) 인

소 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업소명)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8)

확(자) 인 서

업 종		신 고 번 호	제 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 월일	
신청년월일	2024 . . .	대출년월일	. . .
신 청 금액	₩	대 출 금액	₩
융자한도(조건)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1%)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 기계기구 구입( )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으로)서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융자신청서의 제출)및 제7조(융자및상환조건)의 규정에 의거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례 제16조(융자금의 회수)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0조(융자상환 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경기도 식품위생공무원에게 점검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위 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확(자)인자 주소:
성명: (인) (대출자와의 관계:)
조 사 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 하